

자녀가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증여해 주고 싶지만 증여세가 고민이라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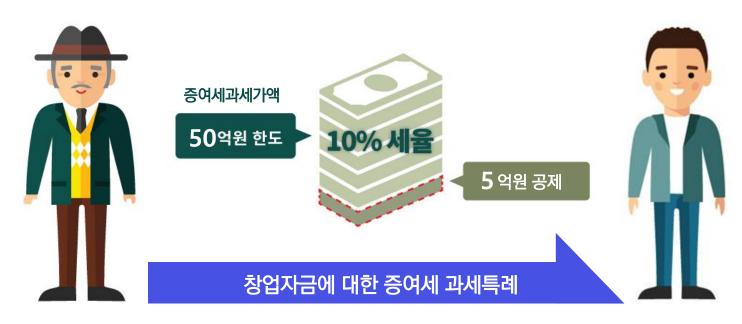



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

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 * 로부터 토지·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

*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



※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는 100억원으로 한도 확대, 한도 초과시 정상세율

부동산 임대업, 병의원 및 소비성 서비스 업종(커피전문점 등)은 특례 제외 꼭확인해야!

창업자금 증여세 절세 효과


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vs. 일반증여
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

증여세 과세가액에서 **5억원 공제 10%의 세율**로 과세 (한도 50억)

*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 한도

- 증여 후 10년이 지나더라도 상속 시 정산
- 신고세액공제 3% 적용 안됨
- 연부연납 O, 물납 O, 비상장주식 물납 X,
-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 X
-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일반증여 재산은 증여세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함

일반 증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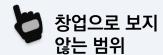
증여공제 (성년자녀 5,000만원) 상속 • 증여세율 10% ~ 50%

-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시 정산에서 제외
- 신고세액공제 3% 적용
- 연부연납 O, 물납 O, 비상장주식 물납 X,
-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 가능
- 증여세 계산시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
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 내용 _ 조특법§30의 5



- ① 조특법상 중소기업 (음식업 포함)
- ② 최대주주일 필요 없음 (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가능)
- * 창업 범위 확대: 신규 창업 뿐 아니라 <u>사업 확장(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치보증금 및</u>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)도 포함



- 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
- ② 합병, 분할,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
- ③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·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산가액에 서 인수·매입한 사업용자산이 50%를 초과하는 경우
- ④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하는 경우
- 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


- ① 증여일로 부터 **2년 이내 창업**
- ② 증여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모두 당해 목적 사용





- ①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
- ② <u>창업 후 10년 이내</u> 수증자의 사망으로 폐업시, (단, 수증자의 상속인이 승계하면 유지) 또는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→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(이자상당액 가산)
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시 확인사항

Check Point

- 음식점은 가능하지만 커피전문점은 적용이 안됩니다.
- 현금성 자산으로만 증여 할 수 있으며, 토지 · 건물 등 양도세 과세 재산은 제외됩니다.
-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됩니다.
-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용 자산 취득하는 것도 창업에 해당됩니다.
-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후 1년 이내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도 50억원 한도 내라면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수증자(자녀)와 증여자(부모)가 공동대표로 창업할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.
- 수증자의 사망 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사후관리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봅니다.
- 창업자금에 대한 연부연납이 허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5년간 6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
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

자녀가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아버지 회사의 하청 또는 동종 업종을 창업하여 부모가 확실히 밀어줄 수 있는 경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